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 1. 8.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9호, 2024. 6.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준·규격 적용 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풀이 신설, 자구 수정 등 총칙과 공통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와 관련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기준·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을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재생원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풀이 신설 및 조문체계 개선

- 1)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업계 및 검사기관 등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의 풀이 추가 및 조문의 체계를 개선(안 I. ~ VII.)

나. 기준·규격 적용 규정 정비

- 1) 공통제조기준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용금지, 용도별 규격의 랩 중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 규정과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용출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출규격 정비(안V. 1. 1-8. 가. 3))

다.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 및 정비

- 1)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를 투입원료로 사용하도록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안 IV. 및 [별표4])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5,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009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009호, 2026. 1. 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I. 1. “기준 및 규격의 목적”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기준과 원재료 등으로부터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 2. 중 “제9조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제2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제9조의2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도 포함한다.”로 한다.
- I. 3. “기준 및 규격의 구성”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준 및 규격의 적용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은 최종제품에 대하여 적합과

부적합(이하 “적부”라 한다)으로 판정한다. (현행의 II. 5. 가.를 변형하여 이동)

-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은 II. 공통기준 및 규격과 III. 재질별 규격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현행의 II. 4. 가.에서 이동)
- 다. 전분, 글리세린, 왁스 등 식용물질이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접촉되어 있는 용기·포장은 총용출량의 규격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 (현행의 II. 4. 나.를 변형하여 이동)
- 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는 제외한다) 등 기타 천연의 원재료로 만들어져 위해 우려가 없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재질별 규격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 (현행의 II. 4. 다.를 변형하여 이동)
- 마. 합성수지제를 구성하는 기본중합체가 50%씩 함유되어 있어 재질별 규격에서 구분하고 있는 두 가지 재질의 정의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재질의 규격을 모두 적용하며,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한다. (현행의 II. 4. 라.를 변형하여 이동)
- 바. 두 가지 이상의 재질로 구성된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재질별로 분리하여 해당 재질의 규격을 각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성 재질의 규격을 모두 적용하며,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한다. (현행의 II. 4. 마.에서 이동)
- 사. 냄비와 같이 본체와 본체에 부속되어 있는 뚜껑 등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본체와 뚜껑 등의 재질 및 색상이 동일하다면 본체에 대해서만 시험하고 적부를 판정할 수 있다. (현행의 II. 4. 바.

에서 이동)

아. 재질과 바탕색상이 다양하게 혼합 구성된 일체형 기구 및 용기·포장은 바탕색상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체를 재질별로 검사하여 해당 재질별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현행의 IV. 1. 서.를 변형하여 이동)

자. 크기나 형태는 다르지만 바탕색상이 동일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재질별로 검사하여 해당 재질별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유리제, 도자기제, 범랑 및 옹기류는 제외한다. (현행의 IV. 1. 어.를 변형하여 이동)

차. 이 고시에 정해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부판정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법보다 더 정밀·정확하다고 인정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현행의 II. 5. 나.을 변형하여 이동)

카.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물질에 대한 주요외국의 기준 및 규격과 일일섭취한계량(Tolerable Daily Intake, TDI) 등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부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어도 시험법이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 한국산업표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OAC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등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험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법, 주요외국의 공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시험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의

II. 5. 다.를 변형하여 이동)

타. 시험 결과에 따른 적부 판정은 실험치(시험에서 얻은 값)를 규격치(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값, n 자리수)보다 한자리수(n+1)까지 더 구한 후 이를 반올림하고 규격치와 비교하여 판정한다. (현행의 II. 5. 라.를 변형하여 이동)

파. 이 고시의 합성수지제(고무제 포함) 재질규격에서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유해물질 등은 잠정적으로 다른 합성수지제(고무제 포함) 재질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한다. (현행의 II. 5. 마.를 변형하여 이동)

I.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 4. 용어의 풀이

가. “검사대상”이란 같은 조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검체가 채취되는 대상을 말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되는 형태가 아닌 대용량으로 포장된 검사대상은 “대포장 검체”라 한다. (현행의 II. 6. 나. 2)와 3)을 변형하여 이동)

나. “검체”란 검사대상으로부터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 (현행의 II. 6. 나. 1)에서 이동)

다. “공중합체”란 두 가지 이상의 단량체가 중합하여 생기는 고분자 화합물을 말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란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용출되는 물질 중 과망간산칼륨에 의해 산화되는 유기물질의 양을 말한다.

마. “단량체”란 화학 반응으로 고분자화합물(중합체)을 만들 때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을 말하며, 모노머(monomer)라고도 한다.

바. “도장가공”이란 방수 등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료를 기구 및 용기·포장 표면에 칠하거나 발라서 피막을 형성하는 작업 과정을 말한다.

사.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란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수지제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상태의 것을 말한다.

아. “법랑”이란 금속의 표면에 유리질 가루를 얇게 입혀서 구워낸 것으로 금속의 견고성과 유리의 아름다움 및 내식성을 가진 재질을 말한다.

자. “영·유아용”이란 생후 12개월 미만인 ‘영아’와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인 ‘유아’가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차. “영·유아용 고무제”란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로 고무젓꼭지, 고무과즙망, 고무빨대 등을 말한다.

카. “용출”이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 시 사용되거나 생성된 물질이 재질에서 식품 또는 용출시험용액(침출용액)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한다.

타. “용출규격”이란 용출시험용액(침출용액)으로 용출되는 유해물질 등의 최대량을 말한다.

파. “인위적 오염물질”이란 재생공정의 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오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하. “일체형”이란 다양한 재질과 바탕색상으로 구성된 부품 등이 하나의 조립된 형태로서 커피머신, 커피그라인더, 제빙기 등을 말한다.

거. “일차방향족아민”이란 암모니아의 수소 원자 하나가 방향족기로 치환되어 있는 아민을 말한다.

너. “잔류”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 시 사용된 미반응 원료 물질이나 생성물질이 재질 중에 남아있는 현상을 말한다.

더. “잔류규격”이란 재질 중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 등의 최대량을 말한다.

러. “제거효율”이란 투입원료의 인위적 오염물질이 재생공정을 거친 후 제거되는 정도를 재생공정 전과 후의 오염물질 농도를 비교하여 백분율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머. “총용출량”이란 용출시험용액(침출용액)으로 용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버. “총휘발량”이란 규정된 온도 및 시간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을 가열할 때 휘발되는 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서. “플레이크”란 사용 후 수거된 페트병을 선별, 절단·분쇄, 세척,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으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어. “합성수지제”란 단량체인 저분자화합물을 기본으로 하여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만든 고분자화합물을 말하며, 폴리머(polymer)라고도 한다.

Ⅱ. 1. “공통제조기준”을 삭제하고, Ⅱ. 1.(중전의 Ⅱ. 1. 가.) “원재료 기준”과 Ⅱ. 2.(중전의 Ⅱ. 1. 나.) “제조·가공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재료 기준 (현행 Ⅱ. 1. 가.에서 이동)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행 Ⅱ. 1. 가. 1)을 변형하여 이동)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시 식품위생법 상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착색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약, 유리 또는 법랑에 녹이는 방법, 그 밖에 식품에 혼입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 Ⅱ. 1. 가. 2)에서 이동)

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DEHP)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용출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 Ⅱ. 1. 가. 3)에서 이동)

라.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보조적으로 사용(정전기 방지, 윤활성

부여 등)하는 원료성 물질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거나 미국, 유럽연합 등 제외국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현행 II. 1. 가. 4)을 변형하여 이동)

마.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현행 II. 1. 가. 5)에서 이동)

바. 식품 제조 시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거나 미국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행 II. 1. 가. 6)에서 이동)

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에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 중 납(땜납 포함)은 0.10% 이하 또는 안티몬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IV.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또는 2-10 안티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현행 II. 1. 가. 7)에서 이동)

아.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도금용 주석 중 납은 0.10%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IV.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현행 II. 1. 가. 8)에서 이동)

자. 전류를 직접 식품에 통하게 하는 장치를 가진 기구의 전극은 철, 알루미늄, 백금, 티타늄 및 스테인리스 이외의 금속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II. 1. 가. 9)에서 이동)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재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시될 경우 원재료로서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현행 II. 1. 가. 10)에서 이동)

카.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은 불순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현행 II. 1. 가. 11)에서 이동)

타.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품과 직접 접촉할 경우에는 IV. 재생원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현행 II. 1. 나. 2) 가)와 나)를 변형하여 이동)

2. 제조·가공 기준

가. 공통기준

- 1)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현행 II. 2. 가.에서 이동)
-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와 부대 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행 II. 1. 나. 1) 가)을 변형하여 이동)
-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 시에는 유독·유해물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II. 1. 나. 1) 나)에서 이동)
- 4) 동제 또는 동합금제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에 접촉하는 부분을 전면 주석도금 또는 은도금이나 기타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의 광택이 있는 것 또는 고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의 도금이 벗겨질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현행 II. 1. 나. 1) 라)에서 이동)
- 5)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용 기구 중 식품과 일부 접촉하는 면에 인쇄하는 경우, 잉크성분이 용출되어 식품으로 옮겨갈 우려가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외한다. (현행 II. 1. 나. 1) 마)를 변형하여 이동)

나. 축산물용 기구

- 1) 축산물용 기구는 분해 조립이 가능하고 세척·소독 및 검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제품, 세척 및 살균·소독제품으로 부식되거나 기타 변화가 없어야 하고, 도자기 또는 범랑 등을 도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Ⅱ. 1. 나. 1) 사)와 아)에서 이동)
- 2) 축산물용 합성수지제의 기구는 내열성이 강하고 부식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독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현행 Ⅱ. 1. 나. 1) 자)에서 이동)

다. 활성·지능 용기·포장 기준

- 1) 식품의 품질 저하 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거나, 식품 신선도 등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에 직접 접촉되어 사용하는 용기·포장(이하 “활성·지능 용기·포장”이라 한다)의 물질은 식품에 옮겨가지 않도록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현행 Ⅱ. 1. 나. 3) 가)를 변형하여 이동)
- 2) 1)에도 불구하고, 활성·지능 용기·포장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기준 및 규격 범위 내에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 다만,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 Ⅱ. 1. 나. 3) 나)를 변형하여 이동)

“Ⅱ. 2.”를 “Ⅱ. 3.”으로 하고, Ⅱ. 3.(종전의 Ⅱ. 2.)중 가.를 안 Ⅱ. 2. 가. 1)로 이동하고, 같은 3.(종전의 Ⅱ. 2.)에 나.와 다.를 각각 가.와 나.로 하며 가.(종전의 나.) 중 “이행될”을 “옮겨갈”로 하고, “이행량”은 “용출량”으로 하며, “이 기준 및 규격”을 “이 고시”로 한다.

Ⅱ. 3.(종전의 Ⅱ. 2.)에 다.와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2-3 수은시험법, 2-4 6가크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현행 Ⅱ. 1. 나. 1) 다)을 변형하여 이동)

라.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3 벤조페논 시험법에 따른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경우, 잉크성분인 톨루엔의 잔류량은 2 mg/m²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Ⅳ. 2. 2-14 톨루엔 시험법에 따른다. (현행 Ⅱ. 1. 나. 1) 바)에서 이동)

“Ⅱ. 3.”을 “안 Ⅲ.”으로 한다.

“Ⅱ. 4.”부터 “5.”까지 “안 Ⅰ. 3.”으로 한다.

“Ⅱ. 6.”을 “Ⅱ. 4.”으로 하고, 4.(종전의 6.)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가. 검체채취의 의의

검체의 채취는 검사대상으로부터 일부의 검체를 채취하여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유해물질 등에 대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검사대상 선정, 검체 채취·취급·운반·시험검사 등은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Ⅱ. 4.(중전의 6.) 나.를 안 Ⅰ.4.로 이동하고, Ⅱ. 4.(중전의 6.) 다.를 나.로 하고, 나.(중전의 다.) 1) 중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여야 한다.”를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Ⅱ. 4.(중전의 6.) 라.를 다.로 한다.

“Ⅱ. 7.”을 “Ⅱ. 5.”으로 한다.

“Ⅲ. 용도별 규격”(중전의 Ⅱ. 3.)을 신설하고, Ⅲ.(중전의 Ⅱ. 3.) 중 “가.”부터 “바.”를 “1.”부터 “6.”으로 하며, 6.(중전의 바.) 중 “1)”부터 “4)”를 “가.”부터 “라.”로 하고, 가.(중전의 1)) 중 “(1)”을 “1)”로 하며, 나.(중전의 2)) 중 “(1)”부터 “(5)”를 “1)”부터 “5)”로 하고, 다.(중전의 3))와 라.(중전의 4))의 “(1)”을 “1)”로 한다.

Ⅲ. 2.(중전의 Ⅱ. 3. 나.)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에 따른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Ⅲ. 5.(중전의 Ⅱ. 3. 마.) [표] 중 “되는”을 “하는”으로 한다.

Ⅲ. 6. 가. 1)(현행 Ⅱ. 3. 바. 1) (1)) 중 “되는”을 “하는”으로 한다.

Ⅲ. 6.(중전의 Ⅱ. 3. 바.) 중 “축산물용 기구 등의 규격”을 “축산물용 기구등”으로 한다.

Ⅲ. 6. 라.(중전의 Ⅱ. 3. 바. 4)) 중 “색소”는 “착색료”라 하고, 1)(중전의 Ⅱ. 3. 바. 4)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난각인쇄용 착색료

1) 난각인쇄용 착색료는 식품첨가물이어야 한다.

“Ⅳ. 재생원료 기준”(중전의 Ⅱ. 1. 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용 대상

가.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재생된 (화학적 재생, chemical recycling) 합성수지(현행 Ⅱ. 1. 나. 2) 나) (1)을 변형하여 이동)

나. 물리적으로 재생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및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합성수지로서,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은 것.(현행 Ⅱ. 1. 나. 2) 나) (2)를 변형하여 이동)

2. 인정 기준

가.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인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중전의 “Ⅲ. 재질별 규격”을 “Ⅴ. 재질별 규격”으로 한다.

Ⅴ.(중전의 Ⅲ.) 1. 1-1. 가.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Ⅴ.(중전의 Ⅲ.) 1. 1-1. 가.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1. 나.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1. 나.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1. 다.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1. 다. 3) “가)”부터 “다)”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1. 라.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1. 라.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1. 마.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1. 마.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1. 바.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1. 바. 3) “가)”부터 “다)”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가.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가.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나.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나. 3) “가)”부터 “사)”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다.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다. 3) “가)”부터 “사)”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라.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라. 3) “가)”부터 “마)”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마.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마. 3) “가)”부터 “마)”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바.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바. 3) “가)”부터 “마)”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사.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사.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아.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아. 3) “가)”부터 “사)”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자.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자. 3) “가)”부터 “바)”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차. 4)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차. 4) “가)”부터 “바)”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카.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카. 3) “가)”부터 “다)”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타.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타. 3) “가)”부터 “다)”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파.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2. 파. 3) “가)”부터 “마)”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3. 가. 4)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3. 가. 4) “가)”부터 “사)”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3. 나. 4)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3. 나. 4) “가)”부터 “바)”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3. 다. 4)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3. 다. 4) “가)”부터 “마)”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3. 라. 4)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3. 라. 4) “가)”부터 “마)” 중 “Ⅳ”을 “Ⅵ”으로 한다.

다.

V.(중전의 Ⅲ.) 1. 1-3. 마. 4)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3. 마. 4)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4. 가.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4. 가. 3) “가)”부터 “바)”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4. 나.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4. 나. 3) “가)”부터 “마)”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4. 다.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4. 다. 3) “가)”부터 “다)”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5. 가.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5. 가.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5. 나.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5. 나. 3) “가)”부터 “다)”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5. 다.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5. 다.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6. 가.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6. 가. 3) “가)”부터 “마)”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6. 나.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6. 나.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6. 다.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6. 다.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6. 라.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6. 라.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7. 가.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7. 가. 3) “가)”부터 “마)”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7. 나.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7. 나.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7. 다.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7. 다. 3) “가)”부터 “마)”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7. 라.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7. 라. 3)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7. 마. 4)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7. 마. 4)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8. 가. 3)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의 용출규격 “1.5 이하”는 “불검출”로 하고,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의 용출규격 “18 이하”는 “18 이하(단, 랩은 불검출)”로 하며, 4)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8. 가. 4) “가)”부터 “사)”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8. 나. 4)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8. 나. 4) “가)”부터 “마)”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9. 가.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9. 가. 3) “가)”부터 “다)”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9. 나. 4)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9. 나. 4) “가)”부터 “라)”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9. 다. 3)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1. 1-9. 다. 3) “가)”부터 “다)” 중 “Ⅳ”을 “Ⅵ”으로 한다.

다.

V.(중전의 Ⅲ.) 2. 다.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2. 다. “1)”부터 “3)”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3. 라.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3. 라. “1)”부터 “9)”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4. 라.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4. 라. “1)”부터 “5)”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5. 라.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5. 라. “1)”부터 “5)”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6. 라.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6. 라. “1)”부터 “4)”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7. 라.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7. 라. “1)”부터 “4)” 중 “Ⅳ”을 “Ⅵ”으로 한다.

V.(중전의 Ⅲ.) 8. 다.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V.(중전의 Ⅲ.) 8. 다. “1)”부터 “5)” 중 “Ⅳ”을 “Ⅵ”으로 한다.

“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을 “Ⅵ.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으로 하며, VI.(중전의 Ⅳ.) 1. 서.와 어.를 삭제한다.

“Ⅴ. 재검토기한”을 “Ⅶ. 재검토기한”으로 한다.

[별표 4] 중 “재생 합성수지제”를 “합성수지 재생원료 인정”으로 한다.

[별표 4] 1.“정의”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2.를 삭제하고 중전의 2. 가. 1) 중 “합성수지제”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로 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중전의 [별표 4] 2. 나. 중 1)부터 3)을 2)부터 4)로 하고, 2)(중전의 2. 나. 1)) 중 “재생 합성수지제”를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하며, “되어야”를 “하여야”로 하고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재생과정

1)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생원료를 제조하는 공정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 “3.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기준”을 “다. 오염물질 제거방법”으로 하고, 다.(중전의 3.) 중 “투입원료”를 “PET재질의 투입원료”로 하고,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을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

준을 충족함을 확인함으로써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를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을 통해 다음 제거기준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4] 1. 다.(중전의 3.) “1) 제거기준”을 신설한다.

[별표 4] 1. 다.(중전의 3.) 1) 중 “가.”부터 “다.”를 “가)”부터 “다)”로 하고, 중전의 3. 가.와 나. 중 “1)”을 “(1)”로 하며, 중전의 3. 다. 중 “1)”부터 “3)”을 “(1)”부터 “(3)”으로 한다.

[별표 4] 1. 다. 2) 가) (3)(중전의 3. 라. 1) 다)) 중 “시험방법”을 “시험법”으로 한다.

[별표 4] 1. 다.(중전의 3.) 중 “라.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 시험법”을 “2) 제거 시험법”으로 하고, 2)(중전의 3. 라.) 중 “가)”부터 “라)”를 “(1)”부터 “(4)”로 한다.

[별표 4] 1. 다.(중전의 3.) 2) 중 “2)”를 “나)”로 하고, 나)(중전의 3. 라. 2)) 중 “가)”부터 “다)”를 “(1)”부터 “(3)”으로 한다.

[별표 4] “4.”를 “라.”로 하고, “최종 제품 기준”을 “그밖에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로 한다.

[별표 4] 1. 라.(중전의 4.) 중 “가.”와 “나.”를 “1)”과 “2)”로 하고, 1) (중전의 4. 가.) 중 “적합하여야 한다.”를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로 한다.

[별표 4] 1. 라. 2)(중전의 4.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관한 정보

[별표 4] 1. 라.(중전의 4.) 3)과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 정보
4) 품질보증에 대한 자료

[별표 4] 1.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합성수지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의 첨부서류 상세 자료(현행 [별표 5]를 변형하여 이동)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가. 투입 원료에 대한 자료	1) 투입 원료의 제조업체 정보 2) 투입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나.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 2) 수입 합성수지 재생원료 및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투입원료(flake 등)가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가. 재생방법의 특성에 대한 자료	1) 재생원리, 방법에 대한 설명 2) 재생공정의 특징 설명
나. 전체 재생공정에 대한 자료	1) 전체 공정 흐름도 2) 공정 단계별 목적, 처리방법,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다. 오염물질 제거공정에 대한 상세자료	1) 오염물질 제거 공정 원리 2) 오염물질 제거 방법 3) 오염물질 제거공정 설비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에 대한 상세자료
라. 재생공정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	1) 재생공정 효율 2) 오염물질 제거공정 운영조건(온도, 기타 조건

	등의 변동범위)에 대한 자료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가. 인위적 오염물질의 오염처리에 관한 자료	1)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 선정 사유 2) 오염물질의 오염처리, 농도 등 상세한 오염방법
나. 인위적 오염물질의 제거에 관한 자료	1) 오염물질의 농도를 확인에 사용한 상세한 시험방법 2) 오염물질의 제거 시험 단계별 상세 시험자료
다. 인위적 오염물질을 이용한 제거시험 결과	1) 인위적 오염시험 결과 2) 재생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나.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관한 정보	1)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성상(사진 포함), 특성, 포장방법(포장재, 포장단위 등), 보관방법 및 표시사항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 정보	1)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조건(용도, 사용온도 등)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라. 품질보증에 대한 자료	1)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법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품질보증과 관련된 인증서 3) 기타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 중인 사항(공정, 설비, 작업자교육 등)

※ 제출을 생략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제출

[별표 4]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폴리프로필렌(PP)

가. 투입원료

- 1)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합성수지제를 분쇄·세척하여 제조한 플레이크(flake) 등 투입원료는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인 것

나)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 사용·수거·선별된 것

다)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단, 비접착식으로 열알칼리성 분리잉크를 사용한 경우 제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라) 육안상으로 이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한 것

나. 재생공정

1)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생원료를 제조하는 공정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시험방법의 타당성(Validation)을 검토·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조 품질 관리 보증을 위하여 표준작업절차서(SOP)를 포함한 위생 및 품질 관리사항 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2)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관한 정보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 정보

4) 품질보증에 대한 자료

라. 합성수지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의 첨부서류 상세 자료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가. 투입 원료의 제조·제공업체에 대한 자료
나. 투입 원료 제조시 사용한 원료(첨가제 등)에 대한 자료

다. 투입 원료의 인정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가. 재생방법의 특성에 대한 자료	1) 재생원리, 방법에 대한 설명 2) 재생공정의 특징 설명
나. 전체 재생공정에 대한 자료	1) 전체 공정 흐름도 2) 공정 단계별 목적, 처리방법,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가. 오염물질 제거공정에 대한 상세 자료 (수거·선별·세척·보관 및 용융 등)	
나. 재생원료의 안전성 확인에 사용한 상세한 시험방법 및 결과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나. <u>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u> 에 관한 정보	1)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성상(사진 포함), 특성, 포장방법(포장재, 포장단위 등), 보관방법 및 표시사항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 정보	1)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조건(용도, 사용온도 등)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라. 품질보증에 대한 자료	1)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법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품질보증과 관련된 인증서 3) 기타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 중인 사항(공정, 설비, 작업자교육 등)

※ 제출을 생략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제출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제2026-009호, 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V. 1. 1-8. 가. 3)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I. 총칙	I. 총칙
1. 기준 및 규격의 목적 이 기준 및 규격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기준과 원재료 등으로부터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준 및 규격의 수록 범위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2. 기준 및 규격의 수록 범위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도 포함한다.
3. 기준 및 규격의 구성 가. 이 기준 및 규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시험법으로 나눈다.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나. 재질별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을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스제, 고무제, 종이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용기류, 전분제로 구분하여 재질별로 정의, 잔류규격, 용출규격, 시험법으로 구성한다. 1) 정의는 해당재질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 물질 및 그 함량, 제조방법 등으로 구성한다. 2)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원료물질 등으로 사용되어 재질 중 잔류하거나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등이 제시되어 있다. 3) 시험법은 공통기준 및 규격, 잔류규격, 용출규격에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개별 항목에 대한 시험법이다. 다. 시험법은 일반원칙, 항목별 시험법으로 구성한다.	
< 신 설 >	3. 기준 및 규격의 적용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은 최종제품에 대하여 적합과 부적합(이하 “적부”라 한다)으로 판정한다. (현행의 II. 5. 가.를

현행	개정(안)
	<u>변형하여 이동)</u>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은 <u>Ⅱ. 공통기준 및 규격과 Ⅲ. 재질별 규격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현행의 Ⅱ. 4. 가.에서 이동)</u> 다. 전분, 글리세린, 왁스 등 식용물질이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접촉되어 있는 용기·포장은 총용출량의 규격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 (<u>현행의 Ⅱ. 4. 나.를 변형하여 이동</u>) 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는 제외한다) 등 기타 천연의 원재료로 만들어져 위해 우려가 없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재질별 규격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 (<u>현행의 Ⅱ. 4. 다.를 변형하여 이동</u>) 마. 합성수지제를 구성하는 기본중합체가 50%씩 함유되어 있어 재질별 규격에서 구분하고 있는 두 가지 재질의 정의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재질의 규격을

현행	개정(안)
	모두 적용하며,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한다. (<u>현행의 Ⅱ. 4. 라.를 변형하여 이동</u>) 바. 두 가지 이상의 재질로 구성된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재질별로 분리하여 해당 재질의 규격을 각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성 재질의 규격을 모두 적용하며,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한다.(<u>현행의 Ⅱ. 4. 마.에서 이동</u>) 사. 냄비와 같이 본체와 본체에 부속되어 있는 뚜껑 등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본체와 뚜껑 등의 재질 및 색상이 동일하다면 본체에 대해서만 시험하고 적부를 판정할 수 있다.(<u>현행의 Ⅱ. 4. 바.에서 이동</u>) 아. 재질과 바탕색상이 다양하게 혼합 구성된 일체형 기구 및 용기·포장은 바탕색상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체를 재질별로 검사하여 해당 재질별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u>현행의 Ⅳ. 1. 서.를 변형하여 이동</u>) 자. 크기나 형태는 다르지만 바탕색상이 동일한 기구 및 용

현행	개정(안)
	기·포장은 재질별로 검사하여 해당 재질별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유리제, 도자기제, 범랑 및 용기류는 제외한다. <i>(현행의 IV. 1. 어.를 변형하여 이동)</i> 차. 이 고시에 정해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부판정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법보다 더 정밀·정확하다고 인정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i>(현행의 II. 5. 나.을 변형하여 이동)</i> 카.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물질에 대한 주요외국의 기준 및 규격과 일일섭취한계량(Tolerable Daily Intake, TDI) 등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부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고시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어도 시험법이 수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 한국산업표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현행	개정(안)
	Standardization),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OAC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등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험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법, 주요외국의 공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시험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i>(현행의 II. 5. 다.를 변형하여 이동)</i> 타. 시험 결과에 따른 적부 판정은 시험치(시험에서 얻은 값)를 규격치(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값, n 자리수)보다 한자리수(n+1)까지 더 구한 후 이를 반올림하고 규격치와 비교하여 판정한다. <i>(현행의 II. 5. 라.를 변형하여 이동)</i> 파. 이 고시의 합성수지제(고무제 포함) 재질규격에서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유해물질 등은 잠정적으로 다른 합성수지제(고무제 포함) 재질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한다. <i>(현행의 II. 5. 마.를 변형하여 이</i>

현행	개정(안)
< 신 설 >	<u>동)</u> 4. 용어의 풀이 가. “검사대상”이란 같은 조건에서 <u>생산·제조·가공된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검체가 채취되는 대상</u>을 말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되는 형태가 아닌 대용량으로 포장된 검사대상은 “대포장 검체”라 한다. (<u>현행의 II. 6. 나. 2)와 3)을 변형하여 이동</u>) 나. “검체”란 검사대상으로부터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 (<u>현행의 II. 6. 나. 1)에서 이동</u>) 다. “공중합체”란 두 가지 이상의 단량체가 중합하여 생기는 고분자 화합물을 말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란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용출되는 물질 중 과망간산칼륨에 의해 산화되는 유기물질의 양을 말한다. 마. “단량체”란 화학 반응으로 고분자화합물을 만들 때 기본단위가 되는 물질을 말하며, 모노머(monomer)라고도 한다. 바. “도장가공”이란 방수 등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료를 기구

현행	개정(안)
	및 용기·포장 표면에 칠하거나 발라서 피막을 형성하는 작업 과정을 말한다. 사.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란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수지체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상태의 것을 말한다. 아. “법량”이란 금속의 표면에 유리질 가루를 얇게 입혀서 구워낸 것으로 금속의 견고성과 유리의 아름다움 및 내식성을 가진 재질을 말한다. 자. “영·유아용”이란 생후 12개월 미만인 ‘영아’와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인 ‘유아’가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차. “영·유아용 고무제”란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로 고무젖꼭지, 고무과즙망, 고무빨대 등을 말한다. 카. “용출”이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 시 사용되거나 생성된 물질이 재질에서 식품 또는 용출시험용액(침출용액)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한다. 타. “용출규격”이란 용출시험용액(침

현행	개정(안)
	<u>출용액</u>)으로 용출되는 유해물질 등의 최대량을 말한다. 파. “인위적 오염물질”이란 재생공정의 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오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하. “일체형”이란 다양한 재질과 바탕색상으로 구성된 부품 등이 하나의 조립된 형태로서 커피머신, 커피그라인더, 제빙기 등을 말한다. 거. “일차방향족아민”이란 암모니아의 수소 원자 하나가 방향족기로 치환되어 있는 아민을 말한다. 너. “잔류”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 시 사용된 미반응 원료물질이나 생성물질이 재질 중에 남아있는 현상을 말한다. 더. “잔류규격”이란 재질 중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 등의 최대량을 말한다. 러. “제거효율”이란 투입원료의 인위적 오염물질이 재생공정을 거친 후 제거되는 정도를 재생공정 전과 후의 오염물질 농도를 비교하여 백분율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며. “총용출량”이란 용출시험용액(침

현행	개정(안)
	<u>출용액</u>)으로 용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버. “총휘발량”이란 규정된 온도 및 시간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을 가열할 때 휘발되는 물질의 총량을 말한다. 서. “플레이크”란 사용 후 수거된 페트병을 선별, 절단·분쇄, 세척,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으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어. “합성수지제”란 단량체인 저분자 화합물을 기본으로 하여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만든 고분자화합물을 말하며, 폴리머(polymer)라고도 한다.
II. 공통기준 및 규격	II. 공통기준 및 규격
1. 공통제조기준	< 삭제 > 1. 원재료 기준 (<u>현행 II. 1. 가.에 서 이동</u>)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
< 신설 >	

현 행	개 정 (안)
	공에 사용하는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행 II. 1. 가. 1)을 변형하여 이동)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시 식품위생법 상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착색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약, 유리 또는 법랑에 녹이는 방법, 그 밖에 식품에 혼입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 II. 1. 가. 2)에서 이동) 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DEHP)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용출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 II. 1. 가. 3)에서 이동) 라.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보조적으로 사용(정전기 방지, 윤활성 부여 등)하는 원료성 물질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거나 미국, 유럽

현 행	개 정 (안)
	연합 등 제외국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현행 II. 1. 가. 4)을 변형하여 이동) 마.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II. 1. 가. 5)에서 이동) 바. 식품 제조시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거나 미국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행 II. 1. 가. 6)에서 이동) 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에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 중 납(땀납 포함)은 0.10% 이하 또는 안티몬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IV.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또는 2-10 안

현행	개정(안)
	<u>티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현행 II. 1. 가. 7)에서 이동)</u> 아.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도금용 주석 중 납은 0.10%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IV.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현행 II. 1. 가. 8)에서 이동) 자. 전류를 직접 식품에 통하게 하는 장치를 가진 기구의 전극은 철, 알루미늄, 백금, 티타늄 및 스테인리스 이외의 금속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II. 1. 가. 9)에서 이동)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재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시될 경우 원재료로서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현행 II. 1. 가. 10)에서 이동) 카.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은 불순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현행	개정(안)
	<u>위생적으로 관리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현행 II. 1. 가. 11)에서 이동)</u> 타.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시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품과 직접 접촉할 경우에는 IV. 재생원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현행 II. 1. 나. 2) 가)와 나)를 변형하여 이동) 2. 제조·가공 기준 가. 공통기준 1)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현행 II. 2. 가.에서 이동)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현행 II. 1. 나. 1) 가)을 변형하여 이동)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 신 설 >

현행	개정(안)
	가공 시에는 유독·유해물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u>현행 II. 1. 나. 1) 나)에서 이동</u>) 4) 동제 또는 동합금제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에 접촉하는 부분을 전면 주석도금 또는 은도금이나 기타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의 광택이 있는 것 또는 고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의 도금이 벗겨질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u>현행 II. 1. 나. 1) 라)에서 이동</u>) 5)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용 기구 중 식품과 일부 접촉하는 면에 인쇄하는 경우, 잉크성분이 용출되어 식품으로 옮겨갈 우려가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외한다. (<u>현행 II. 1. 나. 1) 마)를 변형하여 이동</u>) 나. 축산물용 기구 1) 축산물용 기구는 분해 조립이 가능하고 세척·소독 및

현행	개정(안)
	검사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고 제품, 세척 및 살균·소독제품으로 부식되거나 기타 변화가 없어야 하고, 도자기 또는 법랑 등을 도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u>현행 II. 1. 나. 1) 사)와 아)에서 이동</u>) 2) 축산물용 합성수지제의 기구는 내열성이 강하고 부식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독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u>현행 II. 1. 나. 1) 자)에서 이동</u>) 다. 활성·지능 용기·포장 기준 1) 식품의 품질 저하 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거나, 식품 신선도 등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에 직접 접촉되어 사용하는 용기·포장(이하 “<u>활성·지능 용기·포장</u>”이라 한다)의 물질은 식품에 옮겨가지 않도록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u>현행 II. 1. 나. 3) 가)를 변형하여 이동</u>) 2) 1)에도 불구하고, 활성·지능 용기·포장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
	해당 물질의 기준 및 규격 범위 내에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 다만,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u>현행 II. 1. 나. 3) 나)를 변형하여 이동</u>)
2. 공통규격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등 물질의 이행량은 필요 시 이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재질별 용출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용출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인 경우에는 II. 5. 다. 규정에 따를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의 최대 이행량은 30 mg/L 이하이어야 한다. 다. 식품의 용기·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위생용품	3. 공통규격 < 삭제 > (안 II. 2. 가. 1)로 이동) 가.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용출되어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등 물질의 용출량은 필요 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재질별 용출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용출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인 경우에는 I. 3. 가. 규정에 따를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의 최대 용출량은 30 mg/L 이하이어야 한다. 나. 식품의 용기·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위생용품

현행	개정(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 한다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 한다.
< 신설 >	다. 합성수지제, 가공셀룰로오스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질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이 100 mg/kg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IV.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2-3 수은시험법, 2-4 6가크롬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른다. (<u>현행 II. 1. 나. 1) 다)을 변형하여 이동</u>) 라.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IV. 2. 2-13 벤조페논 시험법에 따른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이 인쇄된 합성수지 포장재 중 내용물 투입 시 형태가 달라지는 포장재의
< 신설 >	

현 행	개 정 (안)
	경우, 잉크성분인 톨루엔의 잔류량은 2 mg/m ²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IV. 2. 2-14 톨루엔 시험법에 따른다. (<u>현행 II. 1. 나. 1) 바) 에서 이동</u>)
3. 용도별 규격	< 삭 제 > (안 III.으로 이동)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	< 삭 제 > (안 I. 3.으로 이동)
5. 기준 및 규격의 적부판정	< 삭 제 > (안 I. 3.으로 이동)
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가. 검체채취의 의의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이 검사대상으로부터 일부의 검체를 채취하여 기준·규격 적합여부, 오염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검사대상	4.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가. 검체채취의 의의 검체의 채취는 <u>검사대상으로부터 일부의 검체를 채취하여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유해물질 등에 대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검사대상 선정, 검체채취·취급·운반·시험검사 등은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검사 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u>

현 행	개 정 (안)
선정, 검체채취·취급·운반·시험검사 등은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체를 채취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다.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1) 검체의 채취는 <u>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여야 한다.</u>	나. < 삭 제 > (안 I. 4.로 이동) 나.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1)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2)~6) (생략)	2)~6) (현행과 같음)
라. (생략)	다. (현행의 II. 6. 라.와 같음)
7. 보존 및 유통기준 가.~다. (생략)	5. 보존 및 유통기준 가.~다. (현행 II. 7. 가.~다.와 같음)
< 신 설 >	III. 용도별 규격(현행 II. 3.에서 이동)
< 신 설 >	1. 랩 제조 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adipate, DEH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용출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 II. 3 가.와 같음) 2.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디부틸프탈레이트(di-n-butyl-phthalate, 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n-butyl-phthalate, BBP) 및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II. 3 나.를 변형하여 이동) 3. 고무젓꼭지의 총휘발량은

현행	개 정 (안)																																							
	0.5%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IV. 2. 2-59 총휘발량 시험법에 따른다. (<u>현행 II. 3. 다.를 이동</u>) 4. 젓병(유리제 및 금속제 제외)의 용량 표시 눈금의 간격은 10 mL로 하며, 최저눈금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젓병의 표시용량(최고표시 눈금) 및 허용차는 다음 표와 같다(단, 아래의 표에 정해지지 않은 표시용량(최고표시 눈금)은 표에 정해진 표시용량(최고표시 눈금)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하되 중간의 것은 상위의 값을 따른다). (<u>현행 II. 3. 라.와 같음</u>) [표] 젓병의 표시용량(최고표시 눈금) 및 허용차(단위 : mL) <table><tr><th colspan="2">표시용량 (최고표시 눈금)</th><th>50</th><th>10</th><th>12</th><th>15</th><th>20</th><th>24</th><th>25</th><th>30</th></tr><tr><td colspan="2"></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d>0</td></tr><tr><td rowspan="2">허용차</td><td>유리제</td><td>± 4</td><td>± 6.5</td><td>± 7</td><td>± 8</td><td>± 9</td><td>± 10</td><td>± 10</td><td>± 12</td></tr><tr><td>합성수지제</td><td>± 3</td><td>± 4</td><td>± 4</td><td>± 4</td><td>± 4</td><td>± 5</td><td>± 5</td><td>± 6</td></tr></table> 5. 유리제 중 가열조리용 기구의 사용용도 및 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는 다음 표와 같음	표시용량 (최고표시 눈금)		50	10	12	15	20	24	25	30			0	0	0	0	0	0	0	0	허용차	유리제	± 4	± 6.5	± 7	± 8	± 9	± 10	± 10	± 12	합성수지제	± 3	± 4	± 4	± 4	± 4	± 5	± 5	± 6
표시용량 (최고표시 눈금)		50	10	12	15	20	24	25	30																															
		0	0	0	0	0	0	0	0																															
허용차	유리제	± 4	± 6.5	± 7	± 8	± 9	± 10	± 10	± 12																															
	합성수지제	± 3	± 4	± 4	± 4	± 4	± 5	± 5	± 6																															

현행	개 정 (안)																	
	며, IV. 2. 2-5 열 충격 강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깨지거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현행 II. 3. 바.와 같음) [표] 유리제 중 가열조리용 기구의 사용용도 및 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 <table><tr><th colspan="2">사용용도</th><th>열 충격 강도 (내열 온도차)</th></tr><tr><td rowspan="2">직화용</td><td>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하는 것이며, 급격한 가열이나 냉각에 견딜 수 있는 것</td><td>400℃ 이상</td></tr><tr><td>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하는 것</td><td>150℃ 이상</td></tr><tr><td>온번용</td><td>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닿지 않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td><td>120℃ 이상</td></tr><tr><td>전자레인지용</td><td>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자파로 가열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td><td>120℃ 이상</td></tr><tr><td>열탕용</td><td>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끓는 물 정도의 열 충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td><td>120℃ 이상</td></tr></table> 6. 축산물용 기구등 가. 착유용 기구(착유기, 냉각기, 유방세척기 등) (현행 II. 3. 바. 1)과 같음)	사용용도		열 충격 강도 (내열 온도차)	직화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하는 것이며, 급격한 가열이나 냉각에 견딜 수 있는 것	400℃ 이상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하는 것	150℃ 이상	온번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닿지 않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	120℃ 이상	전자레인지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자파로 가열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	120℃ 이상	열탕용	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끓는 물 정도의 열 충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120℃ 이상
사용용도		열 충격 강도 (내열 온도차)																
직화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하는 것이며, 급격한 가열이나 냉각에 견딜 수 있는 것	400℃ 이상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하는 것	150℃ 이상																
온번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닿지 않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	120℃ 이상																
전자레인지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자파로 가열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	120℃ 이상																
열탕용	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끓는 물 정도의 열 충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120℃ 이상																

현행	개정(안)
	1) 착유과정 시 원유와 직접적으로 접촉되거나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착유기, 냉각기, 유방세척기, 원유배관 등은 목적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하여야 한다. (현행 II. 3. 바. 1) (1)을 변형함) 나. 집유용 기구(집유탱크, 원유통 등) (현행 II. 3. 바. 2)와 같음) 1) 몸체 내부에 납으로 용접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원자재는 녹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국산업표준 스테인리스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생적으로 성형하여야 하고 외관은 뚜렷한 흠집이나 갈라진 데가 없는 등 사용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원유통의 뚜껑은 밀착되게 설비하여야 한다. 5) 원유통은 내용물이 쉽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낙

현행	개정(안)
	하시험 결과 변형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아니되며, 누수 시험 결과 누수가 확인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도축검인기 (현행 II. 3. 바. 3)와 같음) 1) 검인의 재료는 비철금속이어야 한다. 라. 난각인쇄용 착색료(현행 II. 3. 바. 4)를 변형하여 이동) 1) 난각인쇄용 착색료는 식품 첨가물이어야 한다.
< 신 설 >	IV. 재생원료 기준(현행 II. 1. 나. 2)에서 이동)
< 신 설 >	1. 적용 대상 가.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재생된 (화학적 재생, chemical recycling) 합성수지(현행 II. 1. 나. 2) 나. (1)을 변형하여 이동) 나. 물리적으로 재생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및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합

현행	개정(안)
	성수지로서,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은 것.(현행 II. 1. 나. 2) 나. (2)를 변형하여 이동) 2. 인정 기준 가.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인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II. 재질별 규격	V. 재질별 규격
1. 합성수지제 1-1 올레핀계 가.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ethylene-vinylacetate copolymer : EVA) 1)~2) (생략) 3) 시험방법 가) 납: IV.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IV.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IV. (이하 생략) 라) 비닐아세테이트: IV. (이하 생략)	1. 합성수지제 1-1 올레핀계 가.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ethylene-vinylacetate copolymer : EVA) 1)~2) (현행과 같음) 3) 시험방법 가) 납: VI.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VI.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VI. (현행과 같음) 라) 비닐아세테이트: VI.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나. 폴리메틸펜텐(polymethylpentene : PMP) 1)~2) (생략) 3) 시험방법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4-메틸-1-펜텐: <u>IV</u>. (이하 생략)	나. 폴리메틸펜텐(polymethylpentene : PMP) 1)~2) (현행과 같음) 3) 시험법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4-메틸-1-펜텐: <u>VI</u>. (현행과 같음)
다. 폴리부텐(polybutene-1 : PB-1) 1)~2) (생략) 3) 시험방법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다. 폴리부텐(polybutene-1 : PB-1) 1)~2) (현행과 같음) 3) 시험법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 PVA) 1)~2) (생략) 3) 시험방법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비닐아세테이트: <u>IV</u>. (이하 생략)	라.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 PVA) 1)~2) (현행과 같음) 3) 시험법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비닐아세테이트: <u>VI</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마.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PE) 1)~2) (생략) 3) 시험방법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1-헥센 및 1-옥텐: <u>IV</u>. (이하 생략)	마. 폴리에틸렌(polyethylene : PE) 1)~2) (현행과 같음) 3) 시험법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1-헥센 및 1-옥텐: <u>VI</u>. (현행과 같음)
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 1)~2) (생략) 3) 시험방법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 PP) 1)~2) (현행과 같음) 3) 시험법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1-2 에스테르계 가. 경화폴리에스테르수지(cross-linked polyester resin) 1)~2) (생략) 3) 시험방법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1-2 에스테르계 가. 경화폴리에스테르수지(cross-linked polyester resin) 1)~2) (현행과 같음) 3) 시험법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IV.</u> (이하 생략)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VI.</u> (현행과 같음)
나.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butyl enesuccinate copolymer : PBS)	나.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butyl enesuccinate copolymer : PBS)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험방법	3) 시험법
가) 납: <u>IV.</u> (이하 생략)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1,4-부탄디올: <u>IV.</u> (이하 생략)	라) 1,4-부탄디올: <u>VI.</u> (현행과 같음)
마) 비소: <u>IV.</u> (이하 생략)	마) 비소: <u>VI.</u> (현행과 같음)
바) 포름알데히드: <u>IV.</u> (이하 생략)	바) 포름알데히드: <u>VI.</u> (현행과 같음)
사) 형광증백제: <u>IV.</u> (이하 생략)	사) 형광증백제: <u>VI.</u> (현행과 같음)
다.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butyl enesuccinate -adipate copolymer : PBSA)	다.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 공중합체(butyl enesuccinate -adipate copolymer : PBSA)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험방법	3) 시험법
가) 납: <u>IV.</u> (이하 생략)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라) 1,4-부탄디올: <u>IV.</u> (이하 생략)	라) 1,4-부탄디올: <u>VI.</u> (현행과 같음)
마) 비소: <u>IV.</u> (이하 생략)	마) 비소: <u>VI.</u> (현행과 같음)
바) 포름알데히드: <u>IV.</u> (이하 생략)	바) 포름알데히드: <u>VI.</u> (현행과 같음)
사) 형광증백제: <u>IV.</u> (이하 생략)	사) 형광증백제: <u>VI.</u> (현행과 같음)
라.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 (butylene terephthalate) : PBT)	라.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 (butylene terephthalate) : PBT)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험방법	3) 시험법
가) 납: <u>IV.</u> (이하 생략)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IV.</u> (이하 생략)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VI.</u> (현행과 같음)
마) 1,4-부탄디올: <u>IV.</u> (이하 생략)	마) 1,4-부탄디올: <u>VI.</u> (현행과 같음)
마.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cyclo 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 : PCT)	마.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cyclo 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 : PCT)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험방법	3) 시험법
가) 납: <u>IV.</u> (이하 생략)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안티몬: <u>IV.</u> (이하 생략) 마)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안티몬: <u>VI.</u> (현행과 같음) 마)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VI.</u> (현행과 같음)
바. 폴리아릴레이트(polyarylate : PAR)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IV.</u> (이하 생략) 마) 비스페놀A(페놀, 비스페놀A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u>IV.</u> (이하 생략)	바. 폴리아릴레이트(polyarylate : PAR)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VI.</u> (현행과 같음) 마) 비스페놀A(페놀, 비스페놀A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u>VI.</u> (현행과 같음)
사.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oly(ethylene naphthalate) : PEN)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사.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oly(ethyl ene naphthalate) : PEN)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라)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u>IV.</u> (이하 생략) 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 PET)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안티몬: <u>IV.</u> (이하 생략) 마) 게르마늄: <u>IV.</u> (이하 생략) 바)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IV.</u> (이하 생략) 사) 아세트알데히드: <u>IV.</u> (이하 생략)	라)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u>VI.</u> (현행과 같음) 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 PET)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안티몬: <u>VI.</u> (현행과 같음) 마) 게르마늄: <u>VI.</u> (현행과 같음) 바)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VI.</u> (현행과 같음) 사) 아세트알데히드: <u>VI.</u> (현행과 같음)
자.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poly(lactic acid) : PLA)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비소: <u>IV.</u> (이하 생략)	자.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poly(lactic acid) : PLA)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비소: <u>VI.</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마) 포름알데히드: <u>IV.</u> (이하 생략) 바) 형광증백제: <u>IV.</u> (이하 생략) 차.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PC) 1)~3) (생략) 4) <u>시험방법</u> 가) 아민류(트리에틸아민과 트리부틸아민의 합): <u>IV.</u> (이하 생략) 나) 납: <u>IV.</u> (이하 생략)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라)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마) 비스페놀A(페놀, 비스페놀A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u>IV.</u> (이하 생략) 바) 디페닐카보네이트: <u>IV.</u> (이하 생략) 카.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hydroxybutyl polyester : HBP)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마) 포름알데히드: <u>VI.</u> (현행과 같음) 바) 형광증백제: <u>VI.</u> (현행과 같음) 차.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 PC) 1)~3) (현행과 같음) 4) <u>시험법</u> 가) 아민류(트리에틸아민과 트리부틸아민의 합): <u>VI.</u> (현행과 같음) 나) 납: <u>VI.</u> (현행과 같음)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마) 비스페놀A(페놀, 비스페놀A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u>VI.</u> (현행과 같음) 바) 디페닐카보네이트: <u>VI.</u> (현행과 같음) 카.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hydroxybutyl polyester : HBP)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다.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hydroxybenzoic acid polyester)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파.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 PBAT)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IV.</u> (이하 생략) 마) 1,4-부탄디올: <u>IV.</u> (이하 생략) 1-3 스티렌계 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methylmethacrylate-	다.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hydroxybenzoic acid polyester)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파.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 PBAT)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u>VI.</u> (현행과 같음) 마) 1,4-부탄디올: <u>VI.</u> (현행과 같음) 1-3 스티렌계 가.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methylmethacrylate-

현 행	개 정 (안)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MABS) 1)~3) (생 략)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u>IV.</u> (이하 생략)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MABS) 1)~3) (현행과 같음) 4) 시험법 가) 휘발성물질: <u>VI.</u> (현행과 같음)
나) 1,3-부타디엔: <u>IV.</u> (이하 생략)	나) 1,3-부타디엔: <u>VI.</u> (현행과 같음)
다) 납: <u>IV.</u> (이하 생략)	다) 납: <u>VI.</u> (현행과 같음)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마)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마)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u>IV.</u> (이하 생략)	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u>VI.</u> (현행과 같음)
사) 아크릴로니트릴: <u>IV.</u> (이하 생략)	사) 아크릴로니트릴: <u>VI.</u> (현행과 같음)
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ABS) 1)~3) (생 략)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u>IV.</u> (이하 생략)	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 ABS) 1)~3) (현행과 같음) 4) 시험법 가) 휘발성물질: <u>VI.</u> (현행과 같음)
나) 1,3-부타디엔: <u>IV.</u> (이하 생략)	나) 1,3-부타디엔: <u>VI.</u> (현행과 같음)
다) 납: <u>IV.</u> (이하 생략)	다) 납: <u>VI.</u> (현행과 같음)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하 생략) 마)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바) 아크릴로니트릴: <u>IV.</u> (이하 생략)	행과 같음) 마)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바) 아크릴로니트릴: <u>VI.</u> (현행과 같음)
다.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acrylonitrile-styrene copolymer : AS) 1)~3) (생 략)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u>IV.</u> (이하 생략)	다.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acrylonitrile-styrene copolymer : AS) 1)~3) (현행과 같음) 4) 시험법 가) 휘발성물질: <u>VI.</u> (현행과 같음)
나) 납: <u>IV.</u> (이하 생략)	나) 납: <u>VI.</u> (현행과 같음)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마) 아크릴로니트릴: <u>IV.</u> (이하 생략)	마) 아크릴로니트릴: <u>VI.</u> (현행과 같음)
라. 폴리메타크릴스티렌(polymethacrylstyrene : MS) 1)~3) (생 략)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u>IV.</u> (이하 생략)	라. 폴리메타크릴스티렌(polymethacrylstyrene : MS) 1)~3) (현행과 같음) 4) 시험법 가) 휘발성물질: <u>VI.</u> (현행과 같음)
나) 납: <u>IV.</u> (이하 생략)	나) 납: <u>VI.</u> (현행과 같음)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 <u>IV.</u> (이하 생략) 마. 폴리스티렌(polystyrene : PS) 1)~3) (생략) 4) <u>시험방법</u> 가) 휘발성물질: <u>IV.</u> (이하 생략) 나) 납: <u>IV.</u> (이하 생략)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라)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1-4 아민계 가. 폴리아미드(polyamide : PA)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u>IV.</u> (이하 생략) 마) 일차방향족아민: <u>IV.</u> (이하 생략) 바)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u>IV.</u> (이하 생략)	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 <u>VI.</u> (현행과 같음) 마. 폴리스티렌(polystyrene : PS) 1)~3) (현행과 같음) 4) <u>시험법</u> 가) 휘발성물질: <u>VI.</u> (현행과 같음) 나) 납: <u>VI.</u> (현행과 같음)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1-4 아민계 가. 폴리아미드(polyamide : PA)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u>VI.</u> (현행과 같음) 마) 일차방향족아민: <u>VI.</u> (현행과 같음) 바)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u>VI.</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나.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PU)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이소시아네이트: <u>IV.</u> (이하 생략) 마) 4,4'-메틸렌디아닐린: <u>IV.</u> (이하 생략) 다. 폴리이미드(polyimide : PI)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1-5 아크릴계 가. 아크릴수지(acrylic resin)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나.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PU)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이소시아네이트: <u>VI.</u> (현행과 같음) 마) 4,4'-메틸렌디아닐린: <u>VI.</u> (현행과 같음) 다. 폴리이미드(polyimide : PI)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1-5 아크릴계 가. 아크릴수지(acrylic resin)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u>IV.</u> (이하 생략)	라) 메틸메타크릴레이트: <u>VI.</u> (현행과 같음)
나. 이오노머수지(ionomeric resin)	나. 이오노머수지(ionomeric resin)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방법</u>	3) <u>시험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폴리아크릴로니트릴(polyacrylonitrile : PAN)	다. 폴리아크릴로니트릴(polyacrylonitrile : PAN)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방법</u>	3) <u>시험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아크릴로니트릴: <u>IV.</u> (이하 생략)	라) 아크릴로니트릴: <u>VI.</u> (현행과 같음)
1-6 알데히드계	1-6 알데히드계
가. 멜라민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 MF)	가. 멜라민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 MF)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방법</u>	3) <u>시험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안)
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포름알데히드: <u>IV.</u> (이하 생략) 마) 멜라민: <u>IV.</u> (이하 생략)	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포름알데히드: <u>VI.</u> (현행과 같음) 마) 멜라민: <u>VI.</u> (현행과 같음)
나. 요소수지(urea-formaldehyde resin : UF)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포름알데히드: <u>IV.</u> (이하 생략)	나. 요소수지(urea-formaldehyde resin : UF)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포름알데히드: <u>VI.</u> (현행과 같음)
다. 페놀수지(phenol-formaldehyde resin : PF)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포름알데히드: <u>IV.</u> (이하 생략)	다. 페놀수지(phenol-formaldehyde resin : PF)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포름알데히드: <u>VI.</u> (현행과 같음)
라. 폴리아세탈(polyacetal, poly	라. 폴리아세탈(polyacetal, poly

현행	개정(안)
oxymethylene(POM))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충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포름알데히드: <u>IV.</u> (이하 생략)	oxymethylene(POM))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충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포름알데히드: <u>VI.</u> (현행과 같음)
1-7 에테르계 가. 폴리아릴설향(polyarylsulfone : PASF)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충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비스페놀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u>IV.</u> (이하 생략) 마) 4,4'-디클로로디페닐설향: <u>IV.</u> (이하 생략)	1-7 에테르계 가. 폴리아릴설향(polyarylsulfone : PASF)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충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비스페놀A(페놀, 비스페놀 A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u>VI.</u> (현행과 같음) 마) 4,4'-디클로로디페닐설향: <u>VI.</u> (현행과 같음)
나.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olyetheretherketone : PEEK) 1)~2) (생략) 3) <u>시험방법</u>	나.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olyetheretherketone : PEEK)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현행	개정(안)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충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히드로퀴논: <u>IV.</u> (이하 생략)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충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히드로퀴논: <u>VI.</u> (현행과 같음)
다. 폴리에테르설향(poly(ether sulfone) : PES)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충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4,4'-디클로로디페닐설향: <u>IV.</u> (이하 생략) 마)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향: <u>IV.</u> (이하 생략)	다. 폴리에테르설향(poly(ether sulfone) : PES)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충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4,4'-디클로로디페닐설향: <u>VI.</u> (현행과 같음) 마)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향: <u>VI.</u> (현행과 같음)
라. 폴리페닐렌설향(poly(phenylene sulfide) : PPS) 1)~2) (생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충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라) 1,4-디클로로벤젠: <u>IV.</u> (이하 생략)	라. 폴리페닐렌설향(poly(phenylene sulfide) : PPS)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충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1,4-디클로로벤젠: <u>VI.</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생략) 마. 폴리페닐렌에테르(poly(phenylene ether) : PPE) 1)~3) (생략)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u>IV.</u> (이하 생략) 나) 납: <u>IV.</u> (이하 생략)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라)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1-8 염화비닐계 가. 폴리염화비닐 1)~2) (생략) 3) 용출규격 <table border="1"> <tr> <th>항목</th><th>규격(mg/L)</th></tr> <tr> <td>납</td><td>1 이하</td></tr> <tr> <td>과망간산칼륨 소비량</td><td>10 이하</td></tr> <tr> <td>총용출량</td><td>30 이하 (다만, 침출용액이 n-헥산인 경우 150 이하)</td></tr> <tr> <td>디부틸프탈레이트</td><td>0.3 이하</td></tr> <tr> <td>벤질부틸프탈레이트</td><td>30 이하</td></tr> <tr> <td>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td><td><u>1.5 이하</u></td></tr> <tr> <td>디-n-옥틸프탈</td><td>5 이하</td></tr> </table>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다만, 침출용액이 n-헥산인 경우 150 이하)	디부틸프탈레이트	0.3 이하	벤질부틸프탈레이트	3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u>1.5 이하</u>	디-n-옥틸프탈	5 이하	과 같음) 마. 폴리페닐렌에테르(poly(phenylene ether) : PPE) 1)~3) (현행과 같음) 4) 시험방법 가) 휘발성물질: <u>VI.</u> (현행과 같음) 나) 납: <u>VI.</u> (현행과 같음)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1-8 염화비닐계 가. 폴리염화비닐 1)~2) (현행과 같음) 3) 용출규격 <table border="1"> <tr> <th>항목</th><th>규격(mg/L)</th></tr> <tr> <td>납</td><td>1 이하</td></tr> <tr> <td>과망간산칼륨 소비량</td><td>10 이하</td></tr> <tr> <td>총용출량</td><td>30 이하 (다만, 침출용액이 n-헥산인 경우 150 이하)</td></tr> <tr> <td>디부틸프탈레이트</td><td>0.3 이하</td></tr> <tr> <td>벤질부틸프탈레이트</td><td>30 이하</td></tr> <tr> <td>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td><td><u>불검출</u></td></tr> <tr> <td>디-n-옥틸프탈</td><td>5 이하</td></tr> </table>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다만, 침출용액이 n-헥산인 경우 150 이하)	디부틸프탈레이트	0.3 이하	벤질부틸프탈레이트	3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u>불검출</u>	디-n-옥틸프탈	5 이하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다만, 침출용액이 n-헥산인 경우 150 이하)																																
디부틸프탈레이트	0.3 이하																																
벤질부틸프탈레이트	3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u>1.5 이하</u>																																
디-n-옥틸프탈	5 이하																																
항목	규격(mg/L)																																
납	1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 이하																																
총용출량	30 이하 (다만, 침출용액이 n-헥산인 경우 150 이하)																																
디부틸프탈레이트	0.3 이하																																
벤질부틸프탈레이트	3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u>불검출</u>																																
디-n-옥틸프탈	5 이하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r> <th>레이트</th><th></th></tr> <tr> <td>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td><td>9 이하 (합계로서)</td></tr> <tr> <td>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td><td>18 이하</td></tr> </table> 4) 시험방법 가) 염화비닐: <u>IV.</u> (이하 생략) 나) 디부틸주석화합물: <u>IV.</u> (이하 생략) 다) 크레졸인산에스테르: <u>IV.</u> (이하 생략) 라) 납: <u>IV.</u> (이하 생략) 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바)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사)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u>IV.</u> (이하 생략) 나. 폴리염화비닐리덴(poly(vinylidene chloride) : PVDC) 1)~3) (생략) 4) 시험방법 가) 염화비닐리덴: <u>IV.</u> (이하 생략)	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9 이하 (합계로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18 이하	<table border="1"> <tr> <th>레이트</th><th></th></tr> <tr> <td>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td><td>9 이하 (합계로서)</td></tr> <tr> <td>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td><td>18 이하 (단, 랩은 불검출)</td></tr> </table> 4) 시험방법 가) 염화비닐: <u>VI.</u> (현행과 같음) 나) 디부틸주석화합물: <u>VI.</u> (현행과 같음) 다) 크레졸인산에스테르: <u>VI.</u> (현행과 같음) 라) 납: <u>VI.</u> (현행과 같음) 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바)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사)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u>VI.</u> (현행과 같음) 나. 폴리염화비닐리덴(poly(vinylidene chloride) : PVDC) 1)~3) (현행과 같음) 4) 시험방법 가) 염화비닐리덴: <u>VI.</u> (현행과 같음)	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9 이하 (합계로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18 이하 (단, 랩은 불검출)
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9 이하 (합계로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18 이하												
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9 이하 (합계로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18 이하 (단, 랩은 불검출)												

현 행	개 정 (안)
나) 납: <u>IV.</u> (이하 생략) 다) 바륨: <u>IV.</u> (이하 생략)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마)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나) 납: <u>VI.</u> (현행과 같음) 다) 바륨: <u>VI.</u> (현행과 같음)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마)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1-9 기타	1-9 기타
가. 불소수지(fluorocarbon resin : FR) 1)~2) (생 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가. 불소수지(fluorocarbon resin : FR)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나. 에폭시수지(epoxy resin) 1)~3) (생 략) 4) <u>시험방법</u> 가) 아민류: <u>IV.</u> (이하 생략) 나) 납: <u>IV.</u> (이하 생략)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라)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마) 비스페놀 A: <u>IV.</u> (이하 생략) 바)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u>IV.</u> (이하 생략)	나. 에폭시수지(epoxy resin) 1)~3) (현행과 같음) 4) <u>시험법</u> 가) 아민류: <u>VI.</u> (현행과 같음) 나) 납: <u>VI.</u> (현행과 같음) 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라)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마) 비스페놀 A: <u>VI.</u> (현행과 같음) 바)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u>VI.</u>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사) 에피클로로히드린: <u>IV.</u> (이하 생략) 아) 4,4'-메틸렌디아닐린: <u>IV.</u> (이하 생략)	사) 에피클로로히드린: <u>VI.</u> (현행과 같음) 아) 4,4'-메틸렌디아닐린: <u>VI.</u> (현행과 같음)
다. 폴리케톤(polyketone, PK) 1)~2) (생 략) 3) <u>시험방법</u> 가) 납: <u>IV.</u> (이하 생략)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이하 생략) 다)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다. 폴리케톤(polyketone, PK) 1)~2) (현행과 같음) 3) <u>시험법</u> 가) 납: <u>VI.</u> (현행과 같음)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현행과 같음) 다)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2. 가공셀룰로스제 가.~나.(생 략) 다. <u>시험방법</u> 1) 비소: <u>IV.</u> (이하 생략) 2) 납: <u>IV.</u> (이하 생략) 3) 총용출량: <u>IV.</u> (이하 생략)	2. 가공셀룰로스제 가.~나.(현행과 같음) 다. <u>시험법</u> 1) 비소: <u>VI.</u> (현행과 같음) 2) 납: <u>VI.</u> (현행과 같음) 3) 총용출량: <u>VI.</u> (현행과 같음)
3. 고무제 가.~다. (생 략) 라. <u>시험방법</u> 1) 납: <u>IV.</u> (이하 생략) 2) 카드뮴: <u>IV.</u> (이하 생략) 3) 2-머캅토이미다졸린: <u>IV.</u> (이하 생략)	3. 고무제 가.~다. (현행과 같음) 라. <u>시험법</u> 1) 납: <u>VI.</u> (현행과 같음) 2) 카드뮴: <u>VI.</u> (현행과 같음) 3) 2-머캅토이미다졸린: <u>VI.</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1,3-부타디엔: <u>IV</u> . (이하 생략) 5) 총용출량: <u>IV</u> . (이하 생략) 6) 페놀: <u>IV</u> . (이하 생략) 7) 포름알데히드: <u>IV</u> . (이하 생략) 8) 아연: <u>IV</u> . (이하 생략) 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u>IV</u> . (이하 생략)	4) 1,3-부타디엔: <u>VI</u> . (현행과 같음) 5) 총용출량: <u>VI</u> . (현행과 같음) 6) 페놀: <u>VI</u> . (현행과 같음) 7) 포름알데히드: <u>VI</u> . (현행과 같음) 8) 아연: <u>VI</u> . (현행과 같음) 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u>VI</u> . (현행과 같음)
4. 종이제 가.~다. (생략) 라. <u>시험방법</u> 1) PCBs: <u>IV</u> . (이하 생략) 2) 비소: <u>IV</u> . (이하 생략) 3) 납: <u>IV</u> . (이하 생략) 4) 포름알데히드: <u>IV</u> . (이하 생략) 5) 형광증백제: <u>IV</u> . (이하 생략)	4. 종이제 가.~다. (현행과 같음) 라. <u>시험법</u> 1) PCBs: <u>VI</u> . (현행과 같음) 2) 비소: <u>VI</u> . (현행과 같음) 3) 납: <u>VI</u> . (현행과 같음) 4) 포름알데히드: <u>VI</u> . (현행과 같음) 5) 형광증백제: <u>VI</u> . (현행과 같음)
5. 금속제 가.~다. (생략) 라. <u>시험방법</u> 1) 납: <u>IV</u> . (이하 생략) 2) 카드뮴: <u>IV</u> . (이하 생략)	5. 금속제 가.~다. (현행과 같음) 라. <u>시험법</u> 1) 납: <u>VI</u> . (현행과 같음) 2) 카드뮴: <u>VI</u>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니켈: <u>IV</u> . (이하 생략) 4) 6가크롬: <u>IV</u> . (이하 생략) 5) 비소: <u>IV</u> . (이하 생략)	3) 니켈: <u>VI</u> . (현행과 같음) 4) 6가크롬: <u>VI</u> . (현행과 같음) 5) 비소: <u>VI</u> . (현행과 같음)
6. 목재류 가.~다. (생략) 라. <u>시험방법</u> 1) 비소: <u>IV</u> . (이하 생략) 2) 납: <u>IV</u> . (이하 생략) 3) 이산화황: <u>IV</u> . (이하 생략) 4)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잘릴: <u>IV</u> . (이하 생략)	6. 목재류 가.~다. (현행과 같음) 라. <u>시험법</u> 1) 비소: <u>VI</u> . (현행과 같음) 2) 납: <u>VI</u> . (현행과 같음) 3) 이산화황: <u>VI</u> . (현행과 같음) 4)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잘릴: <u>VI</u> . (현행과 같음)
7. 유리제, 도자기제, 범랑 및 용기류 가.~다. (생략) 라. <u>시험방법</u> 1) 납: <u>IV</u> . (이하 생략) 2) 카드뮴: <u>IV</u> . (이하 생략) 3) 비소: <u>IV</u> . (이하 생략) 4) 안티몬: <u>IV</u> . (이하 생략)	7. 유리제, 도자기제, 범랑 및 용기류 가.~다. (현행과 같음) 라. <u>시험법</u> 1) 납: <u>VI</u> . (현행과 같음) 2) 카드뮴: <u>VI</u> . (현행과 같음) 3) 비소: <u>VI</u> . (현행과 같음) 4) 안티몬: <u>VI</u> . (현행과 같음)
8. 전분제 가.~나. (생략) 다. <u>시험방법</u>	8. 전분제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시험법</u>

현행	개정(안)
1) 비소: <u>IV</u> . (이하 생략) 2) 납: <u>IV</u> . (이하 생략) 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IV</u> . (이하 생략) 4) 포름알데히드: <u>IV</u> . (이하 생략) 5) 형광증백제: <u>IV</u> . (이하 생략)	1) 비소: <u>VI</u> . (현행과 같음) 2) 납: <u>VI</u> . (현행과 같음) 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I</u> . (현행과 같음) 4) 포름알데히드: <u>VI</u> . (현행과 같음) 5) 형광증백제: <u>VI</u> . (현행과 같음)
IV.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VI.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1. 일반원칙 가.~버. (생략) <u>서. 재질과 바탕색상이 다양한</u> <u>게 혼합 구성된 일체형 기</u> <u>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에</u> <u>는 재질별로 검체를 혼합하</u> <u>여 검사할 수 있다.</u> <u>어. 동일한 바탕색인 재질의 기</u> <u>구 및 용기·포장으로 크기</u> <u>나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u> <u>재질별로 검사할 수 있다.</u> <u>다만, 유리제, 도자기제, 법</u> <u>랑 및 용기류는 제외한다.</u>	1. 일반원칙 가.~버. (현행과 같음) <u>< 삭제 > (안 I. 3. 아.로 이동)</u> <u>< 삭제 > (안 I. 3. 자.로 이동)</u>
V. 재검토기한	VII. 재검토기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별표 1]~[별표 3] (생략)	[별표 1]~[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리적 <u>재생 합성수지</u> 기준	[별표 4]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리적 <u>합성수지 재생원료</u> <u>인정</u> 기준
1. 정의	< 삭제 > (안 I. 4로 이동)
물리적 재생 합성수지제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수지제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상태의 것을 말한다.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합성수지를 화학적으로 재생한 원료,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및 공정부산물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제조기준	2. < 삭제 >
< 신설 >	1.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현행	개정(안)
가. 투입원료 1) 합성수지제를 분쇄·세척하여 제조한 플레이크(flake) 등 투입원료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환경부 고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재생공정 < 신 설 > 1)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은 <u>재생 합성수지제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u> 2)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 등을 실시하여, 최종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제조 품질 관리 보증을 위하여 표준작업절차서(SOP)를 포함한 위생 및 품질관리사항 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기준	가. 투입원료 1) <u>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합성수지제를 분쇄·세척하여 제조한 플레이크(flake) 등 투입원료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u> 나. 재생공정 1) <u>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생원료를 제조하는 공정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 2)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은 <u>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다. 오염물질 제거방법

현행	개정(안)
해당 합성수지제에 물리·화학적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u>투입원료를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재생공정에 따라 처리를 한 후,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을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함으로써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u> < 신 설 > 가. 용출기준 1) (생략) 나. 잔류기준 1) (생략) 다. 제거율 기준 1) (생략) 2) (생략) 3) (생략) 라.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 시험법 1) 인위적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가)~나) (생략)	해당 합성수지제에 물리·화학적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u>PET재질의 투입원료를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재생공정에 따라 처리를 한 후,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을 통해 다음 제거기준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u> 1) 제거기준 가) 용출기준 (1) (현행 [별표 4] 3. 가. 1)과 같음) 나) 잔류기준 (1) (현행 [별표 4] 3. 나. 1)과 같음) 다) 제거율 기준 (1) (현행 [별표 4] 3. 다. 1)과 같음) (2) (현행 [별표 4] 3. 다. 2)과 같음) (3) (현행 [별표 4] 3. 다. 3)과 같음) 2) 제거 시험법 가) 인위적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1)~(2) (현행 [별표 4] 3. 라. 1) 가)~나)와

현 행	개 정 (안)
다) 인위적 오염물질의 양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법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u>시험방법</u>, 한국산업표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확립된 <u>시험방법</u>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럽위원회 JRC(Joint Research Centre) 지침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통해 <u>시험방법</u>의 타당성(Validation)을 확인하여야 한다.	같음) (3) 인위적 오염물질의 양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법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u>시험법</u>, 한국산업표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확립된 <u>시험법</u>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럽위원회 JRC(Joint Research Centre) 지침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통해 <u>시험법</u>의 타당성(Validation)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라) (생 략) 2) 오염 방법 및 재생처리 가)~다) (생 략) 4. 최종 제품 기준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u>적합하여야 한다</u>. 나. 재생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은 해당 사용조건(용도, 사용온도, 사용 식품의 종류 등)에서 안전성 및 품질 등에 문제가 <u>있어서는 아니 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4) (현행 [별표 4] 3. 라. 1) 라)와 같음) 나) 오염 방법 및 재생처리 (1)~(3) (현행 [별표 4] 3. 라. 2) 가)~다)와 같음) 라. 그밖에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2)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관한 정보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 정보 4) 품질보증에 대한 자료 마. 합성수지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의 첨부서류 상세 자료 (현행 [별표 5]를 변형하여 이동)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r> <td colspan="2">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td></tr> <tr> <td>가. 투입 원료에 대한 자료</td><td>1) 투입 원료의 제조업체 정보 2) 투입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td></tr> <tr> <td>나. 「식품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가후에나지 환경고사)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td><td>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 2) 수입 합성수지 재생원료 및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투입원료(flake 등)가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td></tr> <tr> <td colspan="2">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td></tr> <tr> <td>가. 재생방법의 특성에 대한 자료</td><td>1) 재생원리, 방법에 대한 설명 2) 재생공정의 특징 설명</td></tr> <tr> <td>나. 전체 재생공정에 대한 자료</td><td>1) 전체 공정 흐름도 2) 공정 단계별 목적, 처리방법,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td></tr> <tr> <td>다. 오염물질 제거공정에 대한 상세 자료</td><td>1) 오염물질 제거 공정 원리 2) 오염물질 제거 방법 3) 오염물질 제거공정 설비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에 대한 상세자료</td></tr> <tr> <td>라. 재생공정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td><td>1) 재생공정 효율 2) 오염물질 제거공정 운영조건(온도, 기타 조건 등의 변동 범위)에 대한 자료</td></tr> <tr> <td colspan="2">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td></tr> <tr> <td>가. 인위적 오염물질의 오염 처리에 관한 자료</td><td>1)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 선정 사유 2) 오염물질의 오염처리, 농도 등 상세한 오염방법</td></tr> <tr> <td>나. 인위적 오염물질의 제거에 관한 자료</td><td>1) 오염물질의 농도를 확인에 사용한 상세한 시험방법 2) 오염물질의 제거 시험 단계별 상세 시험자료</td></tr> <tr> <td>다. 인위적 오염물질을 이용한 제거 시험 결과</td><td>1) 인위적 오염시험 결과 2) 재생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td></tr> <tr> <td colspan="2">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td></tr> </table>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가. 투입 원료에 대한 자료	1) 투입 원료의 제조업체 정보 2) 투입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나. 「식품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가후에나지 환경고사)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 2) 수입 합성수지 재생원료 및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투입원료(flake 등)가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가. 재생방법의 특성에 대한 자료	1) 재생원리, 방법에 대한 설명 2) 재생공정의 특징 설명	나. 전체 재생공정에 대한 자료	1) 전체 공정 흐름도 2) 공정 단계별 목적, 처리방법,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다. 오염물질 제거공정에 대한 상세 자료	1) 오염물질 제거 공정 원리 2) 오염물질 제거 방법 3) 오염물질 제거공정 설비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에 대한 상세자료	라. 재생공정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	1) 재생공정 효율 2) 오염물질 제거공정 운영조건(온도, 기타 조건 등의 변동 범위)에 대한 자료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가. 인위적 오염물질의 오염 처리에 관한 자료	1)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 선정 사유 2) 오염물질의 오염처리, 농도 등 상세한 오염방법	나. 인위적 오염물질의 제거에 관한 자료	1) 오염물질의 농도를 확인에 사용한 상세한 시험방법 2) 오염물질의 제거 시험 단계별 상세 시험자료	다. 인위적 오염물질을 이용한 제거 시험 결과	1) 인위적 오염시험 결과 2) 재생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가. 투입 원료에 대한 자료	1) 투입 원료의 제조업체 정보 2) 투입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나. 「식품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가후에나지 환경고사)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 2) 수입 합성수지 재생원료 및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투입원료(flake 등)가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가. 재생방법의 특성에 대한 자료	1) 재생원리, 방법에 대한 설명 2) 재생공정의 특징 설명																										
나. 전체 재생공정에 대한 자료	1) 전체 공정 흐름도 2) 공정 단계별 목적, 처리방법,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다. 오염물질 제거공정에 대한 상세 자료	1) 오염물질 제거 공정 원리 2) 오염물질 제거 방법 3) 오염물질 제거공정 설비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에 대한 상세자료																										
라. 재생공정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자료	1) 재생공정 효율 2) 오염물질 제거공정 운영조건(온도, 기타 조건 등의 변동 범위)에 대한 자료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가. 인위적 오염물질의 오염 처리에 관한 자료	1)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 선정 사유 2) 오염물질의 오염처리, 농도 등 상세한 오염방법																										
나. 인위적 오염물질의 제거에 관한 자료	1) 오염물질의 농도를 확인에 사용한 상세한 시험방법 2) 오염물질의 제거 시험 단계별 상세 시험자료																										
다. 인위적 오염물질을 이용한 제거 시험 결과	1) 인위적 오염시험 결과 2) 재생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r> <td colspan="2">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td></tr> <tr> <td colspan="2">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서</td></tr> <tr> <td>나.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 원료에 관한 정보</td><td>1)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성상(사진 포함), 특성, 포장 방법(포장재, 포장단위 등), 보관방법 및 표시사항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사용방법, 주의사항</td></tr> <tr> <td>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 정보</td><td>1)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조건(용도, 사용온도 등)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td></tr> <tr> <td>라. 품질보증에 대한 자료</td><td>1)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법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품질보증과 관련된 인증서 3) 기타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 중인 사항(공정, 설비, 작업자교육 등)</td></tr> </table> ※ 제출을 생략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제출 2. 폴리프로필렌(PP) 가. 투입원료 1)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합성수지제를 분쇄·세척하여 제조한 플레이크(flake) 등 투입원료는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인 것 나)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적이고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서		나.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 원료에 관한 정보	1)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성상(사진 포함), 특성, 포장 방법(포장재, 포장단위 등), 보관방법 및 표시사항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 정보	1)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조건(용도, 사용온도 등)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라. 품질보증에 대한 자료	1)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법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품질보증과 관련된 인증서 3) 기타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 중인 사항(공정, 설비, 작업자교육 등)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서											
나.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 원료에 관한 정보	1)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성상(사진 포함), 특성, 포장 방법(포장재, 포장단위 등), 보관방법 및 표시사항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 정보	1)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조건(용도, 사용온도 등)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라. 품질보증에 대한 자료	1)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법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품질보증과 관련된 인증서 3) 기타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 중인 사항(공정, 설비, 작업자교육 등)										

현행	개정(안)
	통제된 체계에서 사용·수거·선별된 것 다)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단, 비접착식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를 사용한 경우 제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라) 육안상으로 이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한 것 나. 재생공정 1)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생원료를 제조하는 공정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시험방법의 타당성(Validation)을 검토·확인하여

현행	개정(안)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조 품질 관리 보증을 위하여 표준작업절차서(SOP)를 포함한 위생 및 품질 관리사항 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그밖에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2)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관한 정보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 정보 4) 품질보증에 대한 자료 라. 합성수지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의 첨부서류 상세 자료 <table border="1"> <tr> <th colspan="2">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th></tr> <tr> <td colspan="2">가. 투입 원료의 제조·제공업체에 대한 자료</td></tr> <tr> <td colspan="2">나. 투입 원료 제조시 사용한 원료(첨가제 등)에 대한 자료</td></tr> <tr> <td colspan="2">다. 투입 원료의 인정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td></tr> <tr> <th colspan="2">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th></tr> <tr> <td>가. 재생방법의 특성에 대한 자료</td><td>1) 재생원리, 방법에 대한 설명 2) 재생공정의 특징 설명</td></tr> <tr> <td>나. 전체 재생 공정에 대한 자료</td><td>1) 전체 공정 흐름도 2) 공정 단계별 목적, 처리방법,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td></tr> <tr> <th colspan="2">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th></tr> <tr> <td colspan="2">가. 오염물질 제거공정에 대한 상세 자료</td></tr> </table>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가. 투입 원료의 제조·제공업체에 대한 자료		나. 투입 원료 제조시 사용한 원료(첨가제 등)에 대한 자료		다. 투입 원료의 인정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가. 재생방법의 특성에 대한 자료	1) 재생원리, 방법에 대한 설명 2) 재생공정의 특징 설명	나. 전체 재생 공정에 대한 자료	1) 전체 공정 흐름도 2) 공정 단계별 목적, 처리방법,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가. 오염물질 제거공정에 대한 상세 자료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가. 투입 원료의 제조·제공업체에 대한 자료																			
나. 투입 원료 제조시 사용한 원료(첨가제 등)에 대한 자료																			
다. 투입 원료의 인정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가. 재생방법의 특성에 대한 자료	1) 재생원리, 방법에 대한 설명 2) 재생공정의 특징 설명																		
나. 전체 재생 공정에 대한 자료	1) 전체 공정 흐름도 2) 공정 단계별 목적, 처리방법,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가. 오염물질 제거공정에 대한 상세 자료																			

현행	개정 (안)
	(수거·선별·세척·보관 및 용용 등) 나. 재생원료의 안전성 확인에 사용한 상세한 시험방법 및 결과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서 나.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관한 정보 1)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성상(사진 포함), 특성, 포장 방법(포장재, 포장단위 등), 보관방법 및 표시사항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사용방법, 주의사항 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 정보 1)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의 사용조건(용도, 사용온도 등) 2)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3)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라. 품질보증에 대한 자료 1)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법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품질보증과 관련된 인증서 3) 기타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 중인 사항(공정, 설비, 작업자교육 등) ※ 제출을 생략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제출
[별표 5] 재생원료 인정 신청시 제출자료	< 삭제 > (안 [별표 4]로 이동)